

## 충청북도내수면개발시험장시험·조사및 분석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<b>411</b>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출연월일 : 2001년 월 일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### 1. 제안이유

- 농지의 양어장 전용허가시 제출토록되어 있던 양어장 적지판정서와 민원인이 수질분석 신청시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
- 정부의 행정간소화 시책에 의하여 양어장적지판정서 제출이 생략되었고 수질분석은 수수료 징수로 인하여 민원인이 기피하고 있으며
- '98년부터 현재까지 수수료 징수실적이 전혀 없어 이후 부터는 시험 의뢰자에게 무료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본 조례는 폐지하고자 함

### 3. 주요골자

- 충청북도내수면개발시험장시험·조사및분석수수료징수조례 폐지

### 4. 의안전문 : 따로 붙임

### 5. 참고사항 : 해당없음

## 충청북도내수면개발시험장시험·조사및 분석수수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

충청북도내수면개발시험장시험·조사및분석수수료징수조례  
(조례제1748호 1989.11.3)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